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2003-86

발의년월일 : 2003. 12. 17
제 안 자 : 오인근 위원외 인

1. 수 정 이 유

○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표현상의 일반 원칙인 정확성이 결여되어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수 정 주요 골자

○ "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."를 "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,"로 수정함 (안 제2조 제4항)

3. 따 로 붙 임

○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.
○ 수정안 조문 대비표.

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 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구성) ① ~③ (생략) ④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, 서기는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.	제2조(구성) ① ~③ (현행과 같음) ④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.	제2조(구성) ① ~③ (개정안과 같음) ④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-86

제출년월일 : 2003. 12.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○ 1995년 내고장 옛이름 책자 발간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간사 문화공보담당관, 서기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로 운영하고 있으나,

○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

2. 주요골자

가. 김제시지명위원회 제2조 제4항 개정

- 당초 : 간사 문화공보담당관, 서기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
- **변경 : 간사 관련업무담당과장, 서기 관련업무담당주사**

3. 참고사항

가.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[illegible]이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~ ③ (생 략) ④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, 서기는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.	제2조(구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.